

#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1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0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## 1. 제안(개정)이유

상위 법령인 「치매관리법」의 일부개정으로 개정 전의 ‘치매상담센터’가 ‘치매안심센터’로 바뀌고 그 기능이 추가되어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던 ‘통합정신·치매센터’를 ‘치매안심센터’로 대체하고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통합정신·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 (※ 붙임 참고)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19. 8. 10. ~ 8. 30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

3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
5)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u>제7조(통합정신·치매센터의 설치 등) 시장은 노인정신건강증진 및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·군수와 협의하여 구·군 관할 보건소에 통합정신·치매센터(이하 “치매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노인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</u></li> <li><u>2.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</u></li> <li><u>3.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</u></li> <li><u>4.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</u></li> <li><u>5. 치매환자 및 가족방문·관리</u></li> <li><u>6. 치매조기검진</u></li> <li><u>7. 그 밖에 구청장·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</u></li> </ol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치매관리법

**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** ① 시·군·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(이하 “치매안심센터“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9. 4. 30.>

1.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
2.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
3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4.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5.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
6.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

6의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

7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,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(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을 안내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4. 30.>

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·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8. 6. 12.]

### ※ 전문개정 전 조항

**제17조(치매상담센터의 설치)** ① 시·군·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(이하 “치매상담센터“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
2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3.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4.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·관리
5. 치매조기검진
6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 요인: 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: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작성대상) ① 시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~ ⑤ 생략

## 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종전에 시비로 운영되던 ‘통합정신·치매센터’의 기능을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‘치매안심센터’가 대신함에 따라 ‘통합정신·치매센터’를 폐지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관련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## 4. 작성자: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과장 김 미 향